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877

제안연월일: 2021년 11월 24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조례안에 따라 초·중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매일 1매씩 의무적으로 지급할 경우 약 3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그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됨.

- 또한 초·중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일시에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규정과 초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2항의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함.
- 따라서 "예산의 범위에서" 마스크를 비축하되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문 간의 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.

Ⅱ. 주요내용

○ "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"을 "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마스크를"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
Ⅲ. **참고사항**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"을 "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마스크를"로 한다.

조례안

- 제4조(지급대상 및 지급방법) ① 교육감은 제4조(지급대상 및 지급방법) ①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교육기관이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**의무마스크를** 지급하여야 한다.
 - 1. 「초 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
 - 2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의무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마스크 지급의 기준·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수정안

-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교육기관이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
- 2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의무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마스크 지급의 기준·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의무마스크"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라 한다)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감염 예방 및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의무마스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급대상 및 지급방법) ①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교육기관이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
 - 2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에게

우선적으로 의무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마스크 지급의 기준·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'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'에 의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되는 날의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